

순천대학교 산업대학원 최고산업관리자과정 운영규정

제정 2011. 12. 30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39조에 의하여 산업대학원(이하 “대학원”이라 한다)에 설치하는 공개강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이 공개강좌의 명칭은 순천대학교 산업대학원 최고산업관리자과정(이하 “과정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

제3조(운영위원회 구성) ① 이 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순천대학교 산업대학원 학사운영 및 학위수여 규정 제2조를 준용한다.

제4조(위원회 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입학 및 수료에 관한 사항
2. 규정 제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3. 학사운영 및 상벌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위원회 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,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입학정원) 이 과정의 모집인원은 40명 내외로 하되,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.

제7조(지원자격) 이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
1. 산업체 및 관련기업 최고관리자, 임원 및 벤처기업인
2. 정부기관 및 지자체의 공무원, 공기업 및 연구기관의 임직원
3. 사회 각 분야의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
4.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사람

제8조(제출서류) 이 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1. 입학원서(별지 제1호 서식)
2. 사업자등록증 또는 재직증명서
3. 그 밖에 필요한 서류

제9조(전형방법) 이 과정의 전형은 서류전형에 의한다.

제10조(교육비 납부) 이 과정에 입학할 허가 받은 사람은 지정된 기간내에 소정의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11조(교육기간) 이 과정의 교육기간은 2개 학기로 하되, 제1학기는 3월에, 제2학기는 9월에 개강한다.

제12조(교육과정) 교육과정은 정규수업, 특별활동, 산업체방문 등으로 구성한다.

제13조(강의) ① 이 과정의 강의는 대학원장이 이 대학교의 전임교원과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한다.

② 강의담당교수는 강의 10일전까지 강의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4조(수업) ① 이 과정의 수업은 주 1회 야간에 실시한다.

② 총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학원장이 인정하

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제15조(수료) 이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수료증(별지 제2호 서식)을 수여한다.

제16조(포상)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
1.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
2.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
3. 이 과정 또는 순천대학교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

제17조(제적)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적할 수 있다.

1. 교육생의 본분을 이탈하는 등 품행이 불량한 사람
2. 학사운영이나 자치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람
3. 출석미달로 1개 학기에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사람

제18조(자치활동) ① 교육생의 자치활동을 위하여 원우회를 둘 수 있다.

② 원우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원우회 총회에서 결정한다.

제19조(재정) ① 이 과정의 재정은 교육비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.

② 세입·세출예산은 순천대학교 기성회계 예산에 편성하여 운영한다.

제20조(교육비) 교육비는 산업대학원 등록금 한도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.

제21조(강사료 및 교재연구비 등) 이 과정의 운영에 참여하는 강사 및 교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료, 교재연구비 및 관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22조(준용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대학교 산업대학원 학사운영 및 학위수여 규정을 준용한다.

부칙(2011. 12. 30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